

| SRI-기본-2021-13 |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기초연구

A Direction of Supporting Artists in Suwon City

최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심지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2021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1년 10월 30일
발행 2021년 10월 22일
ISBN 979-11-6819-009-2 (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2021.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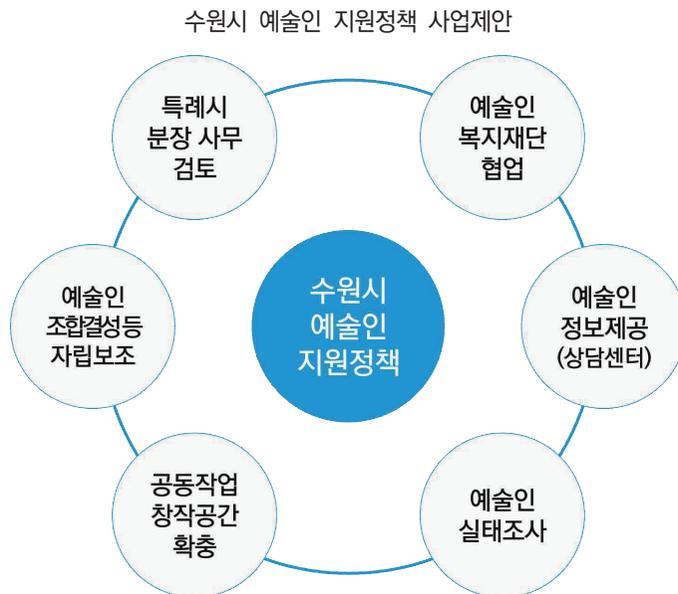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하여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하여 논의
-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위하여 수원시 문화예술과와 수원문화재단 사업 검토, 2021년 9월 제정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점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현황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2019)의 수원시의 자료 분석을 실시함
- 수원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예술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 파악, 예술인 지원사업 참여 사례,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해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사업을 제안함

■ 정책제안

- ① (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예술인 대상 복지제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창구 마련
 - 맞춤형 보육지원, 주거지원 등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신청 자격으로 예술인이 포함되는 사업에 관하여 안내 및 신청 지원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 사업과의 연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원시 및 인근 지역 예술인들의 편의 도모
 - 수원시 공공기관 내 예술인 패스 사용 지원, 수원시 기업 연계를 통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적극 지원을 통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 마련

- ③ (공동작업 창작공간 확충)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한 협업공간 (co-working space) 조성
 - 예술인들은 발표나 전시를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작업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협업공간 (co-working space)이 확산되고 있음
 - 협업공간의 개념을 예술인 창작공간에 도입하여 수원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안정된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수원시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수원시 예술인들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 필요
 - 국가 단위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고,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비정기적인기는 하지만 약 4~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
 - 국가 및 광역 단위 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수원시 예술인에 관한 정확한 활동 실태 조사가 필요, 이를 통해 보다 수원시에 필요한 정책사업 제안이 가능함
- ⑤ (특례시 분장사무 검토)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는데 따른 분장사무 검토 필요
 - 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특례시 차원의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조정 필요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국가차원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예술인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2020년부터 COVID-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지원제도에 대한 수원시 예술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논의 및 흐름

○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은 공식인 활동이나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본인과 주변 타자의 인정을 통해 확립된다는 점을 중요히 여김
- 국내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활동의 증명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다룸

- 예술인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술인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고, 법적으로 예술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범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임

○ 예술인 지원정책의 범주 및 필요성

- 예술정책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예술작품 또는 프로젝트 창작·기획·제작지원,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을 통한 유통과 매개 지원, 시민 대상 예술 향유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기존의 예술정책은 예술의 민주화를 전제로 예술 프로젝트 및 향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예술인 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최근 COVID-19가 유행하며 소득이 적고 불규칙한 예술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예술인 지원에 관련 주요 정책 사업

-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대부분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 수행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창작역량강화, 권리보호 및 권리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 가치 확산, 생활안정지원, 경력관리지원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으로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신문고,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활동증명,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및 보급 등이 있음
-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술인 지원 센터를 설립하였는데, 그 사례로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사업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함

■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 2021년 수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향유·교육지원 정책의 수가 가장 많았고, 예술활동과 예술작품을 지원

하는 예술지원정책, 문화시설 및 유통활성화 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 복지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원문화재단에서 COVID-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사업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2021년)을 추진하였음

■ 수원시 예술인 현황 및 인터뷰 조사 결과

○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 (2021년 8월 기준)는 2,190명으로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고양시 (3,876명), 용인시 (2,395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의 분포를 보면 분야별로는 음악 613명 (28.0%)과 미술 346명 (15.8%)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38.4%), 20대 (23.1%)의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 1,162명 (53%)이 남성 1,028명 (4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 경기도의 결과와 유사함

○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2019) 수원시 자료 분석

-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수원시 예술인 129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업예술인 44.0%, 겸업예술인 56.0%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겸업예술인의 프리랜서 비율 (88.2%)이 전업예술인 (65.1%)보다 높았음
-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로는 강의 및 레슨 (26.2%)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일자리를 갖는 주된 이유는 낮은 소득 (48.1%), 불규칙한 소득 (38.5%) 때문으로 응답함
- 소득과 관련해서는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이 없다 (2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 가입률은 91.8%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29.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상의 자료를 통해 수원시 예술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보다 심화된 논의를 위하여 수원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수원시 예술인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 수원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9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 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 사례,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하여 개별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수원시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를 파악한 결과 예술인들은 창작, 전시, 공연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으로 예술과 연계된 활동 (강의, 기획 등)과 그렇지 않은 활동 (유통, 판매,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과 무관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예술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적어서, 단기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를 제시
- 부당대우에 관한 질문에는 10년 전만해도 공연 및 전시 이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예술인은 신용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안도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신의 4대 보험 가입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가 적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광역 단위 예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모르는 예술인들이 많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됨
-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증명서 발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었음
- 최근 COVID-19로 인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등 예술인 지원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전까지 예술인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예술인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한편 예술의 가치 보존과 예술활동의 특성상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예술인 복지정책을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타 직업군과는 다른 예술가의 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술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직군 전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및 사업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예술인 정책에 대한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조적 혹은 보완적 사업운영을 통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수원시의 여건, 예술인의 현황과 요구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원시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공동작업 창작공간 확충, 수원시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특례시 분장사무 검토를 제안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예술인 지원정책의 논의 및 흐름	7
제1절 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논의	9
1. 예술인 개념과 범위	9
2. 예술인 지원정책의 범주 및 필요성	12
3. 예술인 지원정책의 기반 : 재원과 전달체계 마련	14
제2절 예술인 지원정책의 현황	15
1. 중앙정부 예술인 지원정책	15
2. 지방자치단체 예술인 지원정책	30
제3장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파악	37
제1절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39
1. 예술인 지원 관련 정책 현황	39
2.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4
제2절 수원시 예술인 현황	46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현황	46
2.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2019) : 수원시 자료 분석	49
제3절 수원시 예술인 인터뷰 결과	60
1. 조사개요	60
2. 예술 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 파악	61
3. 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 사례	62
4.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62

제4장 논의 및 결론	65
제1절 지방정부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67
제2절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69

표 차례

〈표 2-1〉 문화비전2030 예술인복지 관련 의제	15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술인 복지정책	16
〈표 2-3〉 「예술인 복지법」 주요 구성	19
〈표 2-4〉 「예술인권리보장법」 주요 구성	21
〈표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현황 (2018~2019년)	22
〈표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2021)	22
〈표 2-7〉 예술인고용보험과 근로자고용보험의 차이	26
〈표 2-8〉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7
〈표 2-9〉 지역별 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30
〈표 2-10〉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 주요 내용	31
〈표 2-11〉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2021)	32
〈표 2-12〉 서울예술인플랜 (2016~2020) 추진사업	33
〈표 2-13〉 부산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2020)	35
〈표 3-1〉 수원시 문화예술과 추진사업 (2021)	40
〈표 3-2〉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사업목표 (2021)	41
〈표 3-3〉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개요 (2020)	42
〈표 3-4〉 수원문화재단의 예술인 활동지원사업 (2021)	43
〈표 3-5〉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현황	47
〈표 3-6〉 인터뷰 참여자 정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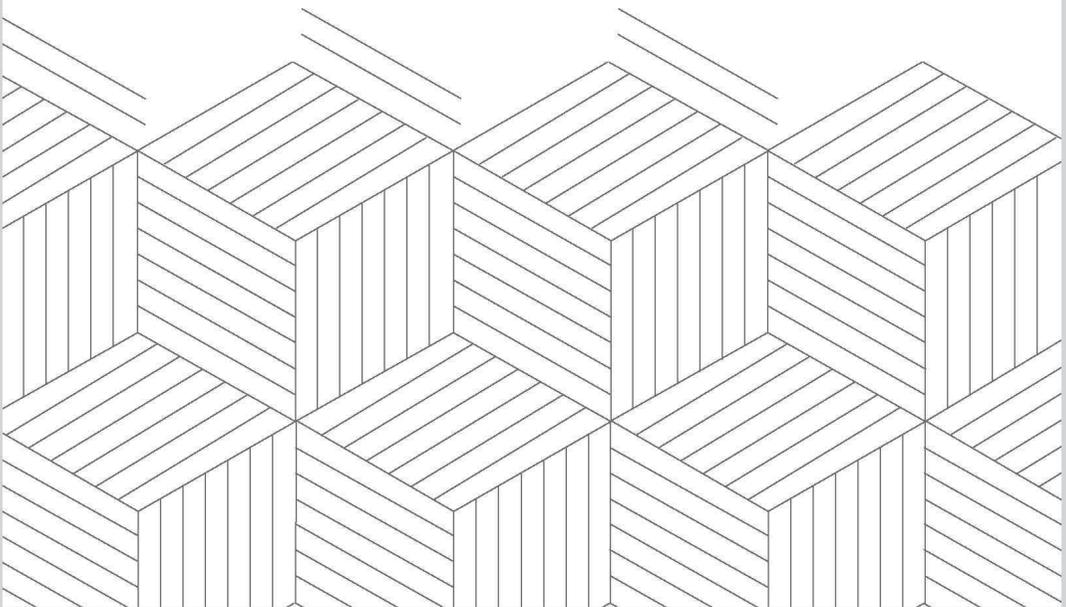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그림 1-2〉 연구의 체계	5
〈그림 2-1〉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범위	10
〈그림 2-2〉 예술인의 정의	11
〈그림 2-3〉 예술정책의 구분 및 흐름	12
〈그림 2-4〉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영역 (유네스코, 1980)	13
〈그림 2-5〉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4
〈그림 2-6〉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절차	24
〈그림 2-7〉 예술인패스 시안	24
〈그림 2-8〉 예술인패스 참여기관	25
〈그림 2-9〉 예술활동증명 절차	29
〈그림 2-10〉 서울예술인플랜 (2016~2020) 비전 및 목표	33
〈그림 3-1〉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추이 (전국)	46
〈그림 3-2〉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분포 (분야별)	48
〈그림 3-3〉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분포 (연령별)	48
〈그림 3-4〉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참여) 횟수	49
〈그림 3-5〉 예술분야 활동기간	50
〈그림 3-6〉 예술인 증명 발급 여부	50
〈그림 3-7〉 저작권 보유 여부	51
〈그림 3-8〉 예술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51
〈그림 3-9〉 예술분야 관련 지원사업 경험여부	52
〈그림 3-10〉 지원사업 참여 형태 (개인/단체)	52
〈그림 3-11〉 기관별 지원 예산 규모	53
〈그림 3-12〉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53
〈그림 3-13〉 개인 창작공간 크기	54
〈그림 3-14〉 개인 창작공간 소유형태	54
〈그림 3-15〉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55

〈그림 3-16〉 별도의 창작공간 필요성	55
〈그림 3-17〉 예술활동 방식	56
〈그림 3-18〉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57
〈그림 3-19〉 지난 1년간 고용형태 - 전업예술인/겸업예술인	57
〈그림 3-20〉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 업무	58
〈그림 3-21〉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	58
〈그림 3-22〉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59
〈그림 3-23〉 4대 보험 가입률	59
〈그림 4-1〉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사업제안	7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예술인들이 창작 및 예술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열악한 직업 환경 속에서 제도적인 보호로부터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왔고, 2011년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점차 관련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예술정책 (2018~2022)에도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2022~2026)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2021년 8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점차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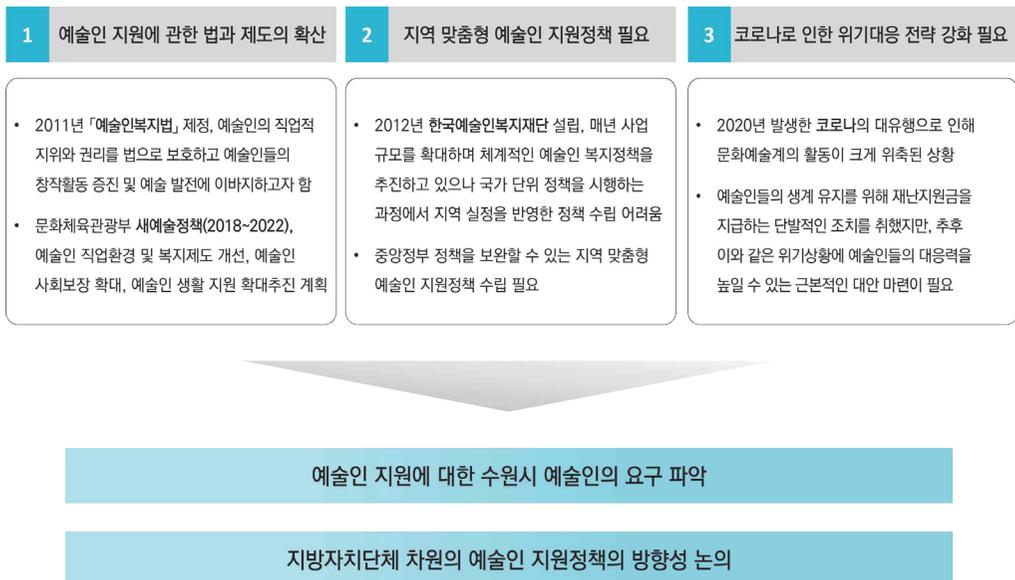
중앙정부의 예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매년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단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혹은 보완해줄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대응전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COVID-19가 몇 년간 유행하면서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문화예술 행사,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예술인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추후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예술인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지원에 관한 수원시 예술인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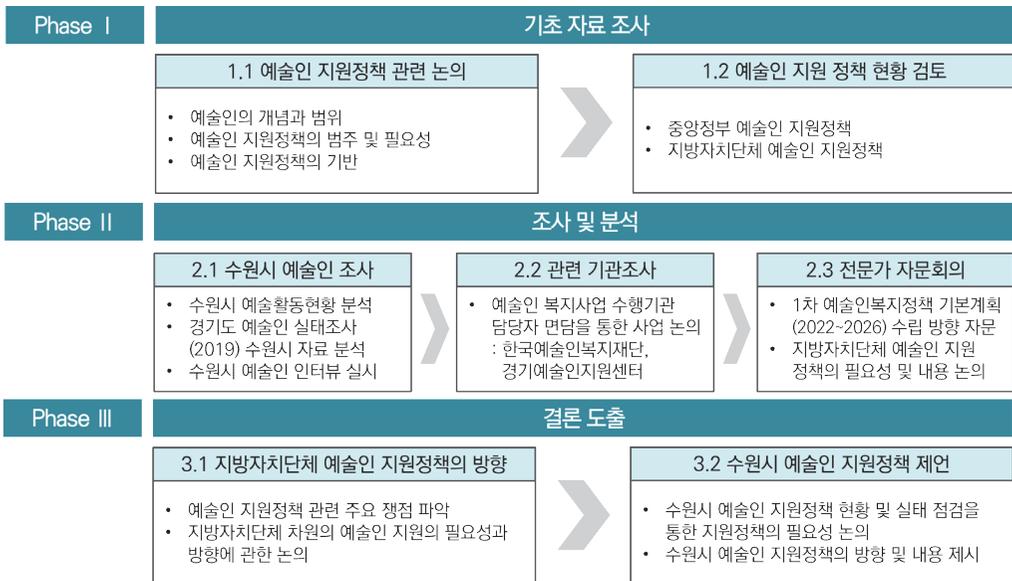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예술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관련 정책 현황 검토, 수원시 예술인 활동실태 및 요구 파악,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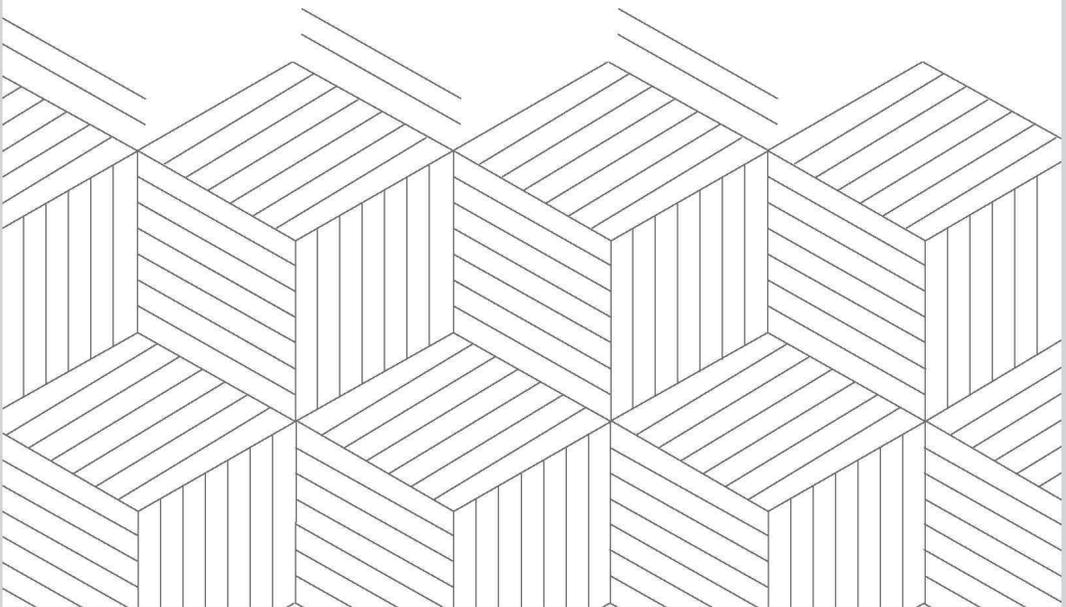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심층면접,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우선 예술인 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동향 파악을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 예술 활동 특성과 지원의 필요성,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예술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의 자료를 활용해 2차 자료 분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수원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 형태 파악, 복지 및 지원사업 참여 경험, 예술인 지원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 흐름에 관한 자문, 지방자치단체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관련 기관 종사자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 현황, 사업 방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체계



제2장 예술인 지원정책의 논의 및 흐름

제1절 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논의
제2절 예술인 지원정책의 현황



제2장 예술인 지원정책의 논의 및 흐름

제1절 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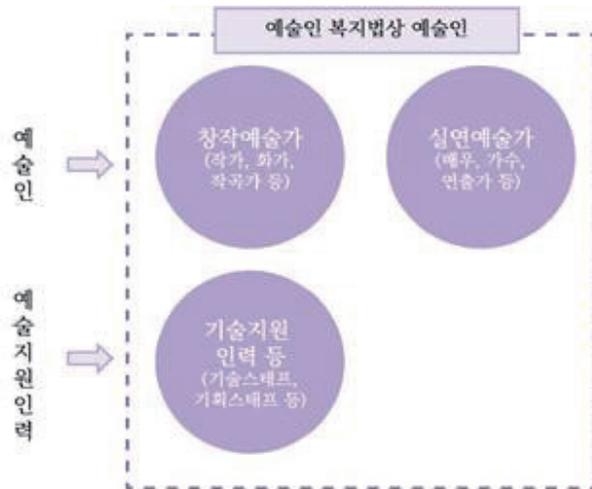
1. 예술인 개념과 범위

유네스코는 1980년 제21차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며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1980)

유네스코의 권고에서는 예술인을 정의하면서 예술인이 독창적인 활동, 본인의 예술적 정체성, 활동의 가치, 기관 및 단체 소속 여부보다는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싶은가의 유무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술인을 정의할 때는 앞서 말한 사안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될 수 있으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삶을 사는 데는 ‘인정’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할 때’ 이들을 예술가로 존중할 수 있는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다. 미국 뉴욕주의 한 법에서는 예술인을 시장적 정의, 교육과 협회의 정의,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정의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예술인으로서 창작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시장적 정의라면 예술인 협회나 조합에 가입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예술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과 협회의 정의에 해당된다. 반면 자신을 스스로 예술인으로 여기고 창작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며 함께 활동을 하는 동료에 의해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정의에 해당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재인용) 이러한 조항에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이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이나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 확립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예술인 지원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한다는 표현은 예술 활동의 주된 목적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하여 예술 활동을 노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예술인의 범위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하였을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분야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 12개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작가, 화가, 작곡가 등의 창작예술가와 배우, 가수, 연출가와 같은 실연예술가와 같은 예술인들은 물론이고 기술지원을 하는 예술지원인력 또한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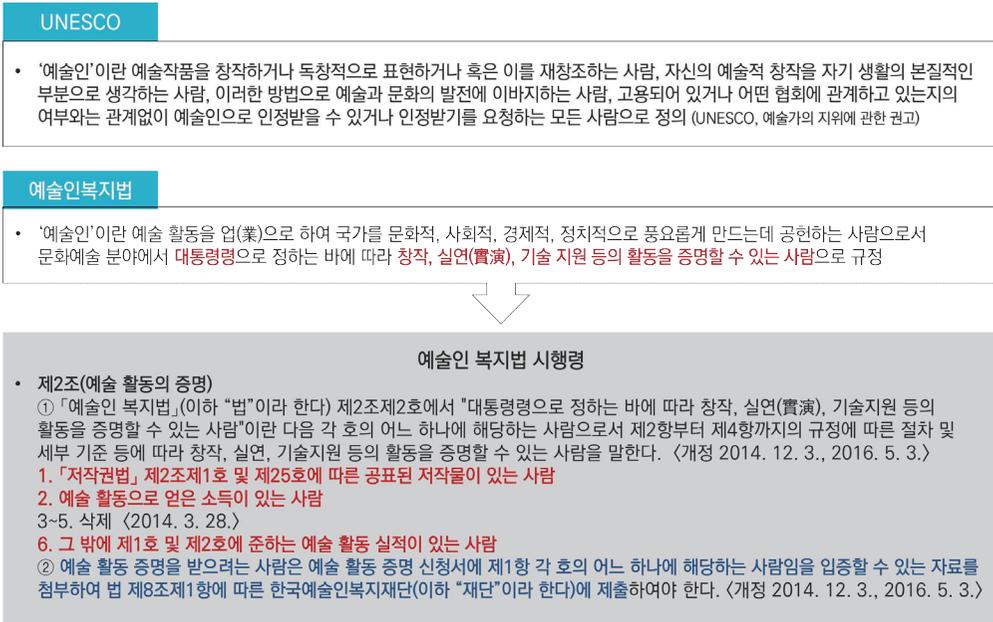
〈그림 2-1〉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범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한편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정의에는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이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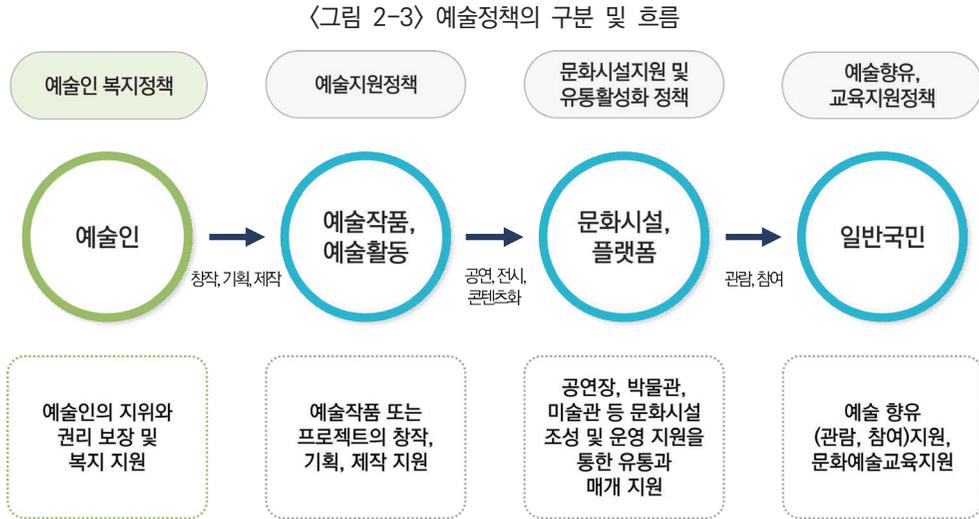
〈그림 2-2〉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을 정의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술인에 대하여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고 법적으로 예술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적 범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예술인의 범위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 예술인 지원정책의 범주 및 필요성

예술정책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예술작품 또는 프로젝트 창작·기획·제작지원,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을 통한 유통과 매개 지원, 시민 대상 예술 향유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자료

지금까지의 예술정책은 예술의 민주화를 전제로 예술프로젝트 및 향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예술인 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COVID-19를 겪으며 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예술인의 생활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복지정책 마련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는 예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의 영역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마련,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지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정책 영역에 부합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림 2-4〉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영역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80)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인권, 기본 자유권, 사회적 존중과 권리를 보장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입법 체계 구축 •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 제공 •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 제공(생명, 건강, 노동환경의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의 형성 • 예술인의 고용 장려, 유급직업 기회 증대 • 예술인의 직업 안내 정책 • 다른 분야에 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인에게도 확대 적용(노동시간, 주간휴일, 유급휴가 등) •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호하는 이윤 분배 제도 • 예술 활동기구를 통한 보조금 지원, 예술기업의 설립 • 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의 개발 장려 • 예술 활동에 과하는 간접세의 경감 등을 통한 활성화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각하기 위한 의도된 교육 제공 • 장학제도 및 유학 지원 •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 국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직업 안내 및 훈련정책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이익을 대변·방어할 수 있는 노조·직업적 조직 결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국제적 직업이동의 보장, 국제여행과 교류 장려 • 예술인의 외국에서의 활동 장애요인 제거(이민, 인종, 편견 등) •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 등

자료 : 차민경 외(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리

이처럼 예술정책 중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인 직업 활동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의 개인 활동이 잦으며,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斷續的) 직업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은 잦은 실업과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잦으며 예술생태계는 승자독식 시장으로 일부 유명한 스타 예술인들이 시장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다수의 예술인들은 평균 이하 혹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예술인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으로 예술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민경 외, 2020)

또한 예술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예술인은 작업 및 작품 활동을 통해 그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발전은 예술인의 존재와 창조적 역할 수행에 좌우되며 예술의 생동감과 활력은 예술인의 개인적, 집단적 행복에 의존하는 특징(유네스코, 1980)이 있기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다.

3. 예술인 지원정책의 기반 : 자원과 전달체계 마련

예술인 지원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 전달체계가 견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재정적 기반은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된다.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와 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밖에 예술인등의 상호부조, 공공부조 등을 통한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열악할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신규 사업을 개설하여 유지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예술인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총괄 운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과 내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구축하며, 그 하위의 실행주체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기획과 실행, 관련 예산의 운용 등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제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중앙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모든 정책기획과 전달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차민경 외, 2020) 이러한 중앙 중심적 체계 하에서 지금까지 예술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 2-5〉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자료 : 한상헌 외(2020), 2019 대전시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제2절 예술인 지원정책의 현황

1. 중앙정부 예술인 지원정책

1)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개

1980년 유네스코는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범위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보장, 노동정책, 예술 활동 여건 지원, 교육·훈련 지원,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예술인 지원 정책은 예술 활동 여건지원과 사회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노동정책과 교육·훈련사업도 진행했으며,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과 제도를 통해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분절화된 정책 추진, 예술인 복지정책의 범위 설정의 불명확함 등의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2~2026)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표 2-1〉 문화비전2030 예술인복지 관련 의제

의제	세부과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제도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민관 협치 강화) 현장과 함께 문화예술 노동환경 지속 개선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예술인복지강화 :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패스제공, 예술인의 창작, 주거연계 확산 지원, 예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매개자 교육, 심리상담, 의료비, 자녀돌봄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실효성제고 : 표준계약서 확대 및 서면계약 의무화 - 신고 용이성 확대 :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기반조성 : 콘텐츠시장 공정성 확대를 위한 법 제도 등 기반 마련 - 기준마련 : 공정보수 기준 공시제도 도입 및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합리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통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을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예술인 권익보장,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개발보급,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시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는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의제로 문화예술인의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세부과제로 제안하였고,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의제로는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술인 복지정책

연도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설계 및 도입,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확대, 저작권 보호 강화 • 창작활동 지원(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가입 지원하고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 보험 설계 시 반영 추진 -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30% 지원 - 창작지원금 및 교육훈련 지원(창작지원금 월 60만원, 5개월/ 교육훈련 강좌형·맞춤형·바우처) • 예술인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예술인이 활동하는 장르의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예술인할인(패스)' 시범 시행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대('13년 30% ⇒ '14년 50%) • 예술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패스 도입, 예술인 대상 국공립 문화시설문화예술 관람 시 입장료 할인혜택(30% 이상)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 - 예술인의 지역·기업 파견 지원, 교육비 지원(최대 1백만 원), 예술인 잡페어 개최 등 - 예술인 신문고 구축 - 문예지 발간 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 의무화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 무술연기자, 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의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료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립예술단체·공공기관·문예기금 지원단체 대상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0%) 지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고위험 예술인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3백만 원) 수시 지원(4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에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및 홍보 확대(최대 6000명) -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50% 지원(최대 2000명 지원) -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추진(고용노동부 협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인신문고)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최대 2백만원), 시정조치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예술인 복지 정책 협력 확대 - (국토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국토부, 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17.2월), 예술인의 주거복지 확충 - (복지부)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17년 4,000명, 300만원 지원/120억)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청 편의 증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19),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8.상/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금고) '19년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관리위원회 구성(5명), 다각적 재원조성 방안 마련(기부금, 예술인 자부담 등) - (근로여건) 문예기금 지원사업 투입 공연예술 인력 단가 조사·검토, 공공디자인·시각예술 용역대가 기준 등 고시 마련, 대중문화 산업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실시 -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7년 월 2,134천원 → '18년 월 2,234천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계약기간 11개월 → 12개월) - 예술인 창작준비금(4,500명) 지원제도 개선(절차, 선정 기준 등)

자료: 한상현(2019),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대전세종연구원.p.29~30

2)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보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의 주체가 되는 예술인이라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복지법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국회에서는 정병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예술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편입 방안,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술인 복지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후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이 추진되는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박영정, 2012)

이러한 가운데 2011년 1월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면서 관련법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2009년 정병국 의원,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2011년 2월 전병헌 의원, 2011년 4월 최종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은 사회적 여론, 국회 및 정부, 문화예술계의 협력 속에서 적극 추진되었고, 2011년 10월 18일 발의된 네 개 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17일을 기준으로 공포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조항 가운데 법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는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표 2-3〉 「예술인 복지법」 주요 구성

「예술인 복지법」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제4조의3 실태조사
-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 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
-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6조의3 재정지원의 중단 등
- 제6조의4 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제9조 정관
- 제10조 재단의 사업
- 제10조의2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
-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 임원
- 제13조 이사회
-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 제15조 감독 등

제5장 보칙

- 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 위탁

제6장 벌칙

- 제17조 과태료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국회에서 첫 발의되고 3년만인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헌법 제22조 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

이 법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Me Too) 운동 등의 후속 조치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기존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를 이 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복지법」에서의 예술인의 정의와는 다르게 예비예술인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더 취약한 예비예술인들이 권리 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도 명확히 하는데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 지원사업에서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특히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¹⁾

〈표 2-4〉 「예술인권리보장법」 주요 구성

「예술인권리보장법」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4조 예술인의 역할
- 제5조 국가기관 등의 책무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보호 증진

- 제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 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예술 활동 개입 금지
- 제12조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 제13조 불공정행위 금지
- 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제15조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제17조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제1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제19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중략)
- 제2절 예술인보호관 (중략)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 제28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 제29조 신고 사실의 조사 (중략)
-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1조 과태료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²⁾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의 중심으로 맡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기준 전체 예산은 약 312억 원이며, 사업별 예산편성비율은 창작역량강화 사업이 57.0%로 가장 많았고 직업역량강화사업 26.2%,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8%, 불공정관행 개선지원 5%, 사회보험 가입지원 3.8%로 나타난다.

〈표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현황 (2018~2019년)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예산액
직업역량강화	8,191,000	8,191,000	13,021	8,204,021
창작역량강화	13,954,000	17,804,000	-	17,804,000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975,000	1,547,000	-	1,547,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1,000,000	1,200,000	6,390	1,206,390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1,000,000	-	-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	2,343,000	2,467,000	-	2,467,000
합계	27,463,000	31,209,000	19,411	31,228,411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2019년 연차보고서

재단의 주요 사업은 창작역량강화, 권리보호 및 권리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가치확산, 생활안정지원, 경력관리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2021)

구분	내용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패스
권리보호 및 권리지원	예술인 신문고, 권익보호교육, 심리상담,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안내,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가치확산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역량강화
생활안정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의료비 지원
경력관리지원	예술 활동증명, 표준계약서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자료는 2019년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www.kawf.kr) 내용을 참고함

(1) 창작준비금지원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디딤돌, 작은 씨앗)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 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창작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면 되고, 신진예술인은 창작 작은 씨앗에 지원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예술창작활동중인 현업예술인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이고 지원 규모는 1인 200만 원 (작은 씨앗), 300만 원 (디딤돌)이다.

(2) 예술인 신문고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 및 절차로는 1단계 사전상담 신고 및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단계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3단계 위원회 조사내용 검토 및 필요시 분쟁 조정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4단계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5단계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다.

(3) 권익보호교육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 환경과 법, 제도 등 대해 교육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업종사자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관련 협력 단체, 예술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및 단과대학이다. 교육 프로그램 종류에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예비예술인 대상 특강 지원이 있으며 온·오프라인 형태로 교육을 제공한다.

(4)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해소를 통해 창작의욕과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12회 한도로 지원하며,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재단의 지정 상담센터로 지급된다. 지원 형태는 개인 심리 상담과 집단 심리상담 두 가지가 있다.

(5)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상담 서비스이며 본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술인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상담 접수가 되면 전화, 온라인, 방문형태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림 2-6〉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절차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6) 예술인패스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학예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로 이를 통해 공연, 전시, 의료, 시설대관, 카페이용 등을 이용할 시 할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림 2-7〉 예술인패스 시안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그림 2-8〉 예술인패스 참여기관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7)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안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 및 이를 통한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근로자고용보험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2-7〉 예술인고용보험과 근로자고용보험의 차이

구분		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고용보험
적용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단, 단기예술인 소득기준 미적용) 65세 이후 신규	주 15시간 미만 65세 이후 신규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예술인	사업주
	가입기간 (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근로계약 기간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 *보험료율)	보수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기준경비율 20% 적용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1.4% *21년 7월 1일부터 1.4% 적용, 이전 1.6%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보험료 납부자	사업주	사업주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8)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2-8〉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가입형태	지역·임의가입	사업장가입	
표준계약 체결시	월 45,000원	월 32,800원	월 32,8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체결후 코로나19 피해시	월 72,000원	월 65,600원	월 65,60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이수시	월 45,000원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또는 80% 지원	'21년 최저임금 월 1,822,480원 기준 납부보험료 40% 또는 80% 지원	

주석 : 지원금 상한액 기준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고,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을 적용함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9) 예술인 산재보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활동 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10)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지역 등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표방하는 사업이다. 참여 예술가는 매칭된 기업 혹은 단체의 프로젝트에 리더 예술인 혹은 참여 예술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1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반적인 금융제도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3년 상환 2.2%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8,000만원 이내에서 2년 상환 1.7%의 금리로 대출 지원가능하다.

(12)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예술인들이 평일저녁, 주말동안에도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자녀 (24개월~10세)이며 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1~13세도 이용가능하다.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센터는 대학로 반디돌봄센터, 마포 예봄센터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1시간 당 500원이다.

(13)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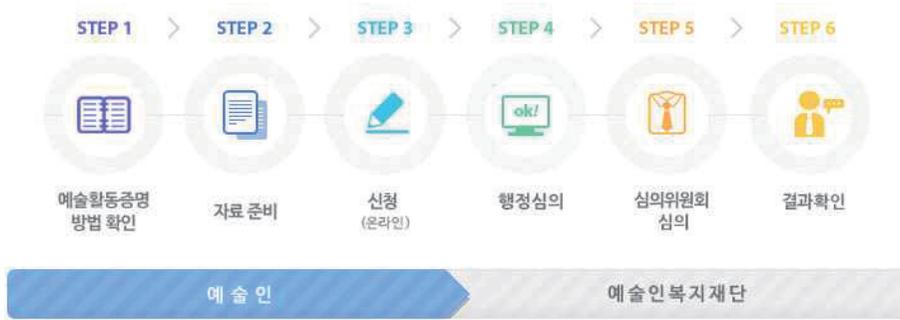
과도한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인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예술 활동을 완료한 예술인이지만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 심의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 소득이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하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의 예술인이어야 한다.

(14)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예술분야 문학, 미술 (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방송, 공연), 만화와 예술 활동 유형인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에 대한 예술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예술활동증명 방법 및 확인 자료를 준비다. 증빙 자료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 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하면 된다. 증명 방법은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예술분야, 직군별 기준 확인), 예술 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의 경우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선택이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예술 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가 있다. 2단계 신청 및 접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kawfartist.kr)에서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완료' 문자 및 이메일이 전송된다. 3단계 행정심의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부합 여부를 결정한다. 4단계 심의위원회 검토를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5단계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그림 2-9〉 예술활동증명 절차



자료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15)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활동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예술계에 진입할 예비 예술인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업 및 예비예술인 8,1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술인 지원정책

1) 관련 조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예술인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5개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평군,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의왕시, 파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예술인 복지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2-9〉 지역별 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내용
광역 (16개)	강원도(2020), 경기도(2020), 경상남도(2019), 경상북도(2017), 광주광역시(2019), 대구광역시(2019), 대전광역시(2020), 부산광역시(2020), 서울특별시(2021), 울산광역시(2013), 인천광역시(2021), 전라남도(2020), 전라북도(2020), 제주특별자치도(2019), 충청남도(2020), 충청북도(2021)
기초 (25개)	경기도 가평군(2018), 경상북도 경산시(2017), 광주광역시 서구(2021), 경기도 구리시(2016), 전라북도 군산시(2017), 대구광역시 남구(2021), 대구광역시 달서구(2020), 대구광역시 동구(2020), 대구광역시 북구(2020), 대구광역시 서구(2020), 대구광역시 수성구(2021), 강원도 동해시(2021), 경기도 성남시(2021), 전라남도 순천시(2020), 경기도 안양시(2020), 경기도 여주시(2017), 경기도 의왕시(2021), 전라북도 익산시(2021), 인천광역시 서구(2016), 전라북도 전주시(2020), 경상남도 창원시(2019), 강원도 춘천시(2018), 경기도 파주시(2021), 강원도 평창군(2020), 경기도 하남시(2019)

주 1 : 괄호는 제개정 후 최종 공포 년도를 의미함

주 2 : 법규명에 '예술인 복지'가 들어간 사례에 대하여 정리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편 경기도는 2021년 8월 10일 기준으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시행을 공고, 해당 조례는 도내 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당 25만 원 정도로 구상중이며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마중물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3)

〈표 2-10〉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중략)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예술인 지원센터

지역의 예술인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2018년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2019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 2020년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순으로 개소하였다. 지역 예술인 지원센터의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기관의 사업을 지역에서 참고하여 비슷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경우 그동안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 상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해왔으며 추후에는 예술인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하고 있다. 2021년 사업에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사업을 위한 심화교육 개발 및 예술사업체 (조합) 결성지원 및 컨설팅,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3) 예술인 창작수당은 ‘기본소득’ 마중물 (머니투데이, 2021.8.3.)

〈표 2-11〉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2021)

구분	내용
예술인 전수조사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내 예술인 현황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기 예술인 DB를 구축,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 사업으로는 이해관계자별 FGI 운영, 도내 예술인, 단체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가 있음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상담 운영 : 전화, 온라인, 현장 등에서 심리, 법률 등의 특별 상담과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실시 예술인아카데미 : 권익보호교육(지적재산권, 계약, 고용보험), 자립역량 교육(창업), 예술경험 공유 교육 청년예술인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거주 청년(만19~34세) 예술인, 300만원 지원(200명 선정)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경기도 소재 사업체 창작공간 임차료의 월 50%지원(10개월, 최대 300만원, 25건) 예술사업체(조합) 및 결성지원 컨설팅경기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지원
예기술술, 예술과 기술로 생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극복을 위하여 예술인 스스로 새로운 대안의 창작(job creation)을 개발하여 자립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장비, 공간 등을 활용한 기술융합 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자료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업무계획

3) 지역 예술인 지원정책 사례4)

(1) 서울특별시,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시는 예술인 복지 및 처우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사회보장이 시작되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 (2016~2020)을 발표하였다.

예술인 지원 계획의 방향은 ‘복지는 정부가, 생활은 서울시가’이고, 계획의 주요 의제는 예술인 주거 및 창작공간 확충 (Housing), 예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동 기회 부여 (Opportunity), 진입 장벽이 없는 창작활동 촉진 (Promotion), 예술인 교육 및 교류를 지원하는 성장과 발전사업 (Education&Exchange), 지속가능한 예술 환경 구축 (Sustainability)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서울예술플랜은 2020년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변화된 예술 환경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재정리 및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 현재 서울예술인플랜 (2021~2025)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4) 서울시, 부산시의 예술인 지원 종합정책과 지역의 예술인 지원사업 가운데 시사점이 있는 사례를 정리함

〈그림 2-10〉 서울예술인플랜 (2016~2020) 비전 및 목표



〈표 2-12〉 서울예술인플랜 (2016~2020) 추진사업

목표	추진과제	추진부서	
주거·창작공간	① 예술인 주택 조성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	주택건축국	
	② 서울시 창작공간 기능재편, 공유		
	서울시 창작공간 기능재편, 공유 창작공간 확대	서울문화재단	
	민간 공동 창작공간 운영지원	서울문화재단	
	공유형 공공 창작공간 조성지원	문화예술과	
활동기회	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 활동기회 확대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활동기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신진예술가 참여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공공예술 관광자원화, 공공예술 해설사 운영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찾아가는 공공예술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수요자 확산, 예술교육 활동기회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일상속의 예술 거리예술 활동기회	문화정책과	
	예술을 통한 사회적 치유 예술치유 활동기회	서울문화재단	
	생활 가까이의 예술, 생활예술 활동기회	서울문화재단	
	시민 접점의 예술, 서울 청년예술단	문화예술과	

	공공참여예술 활동기회	예술인 뉴딜일자리	서울시
	서울은 놀이터, 문화예술 축제 활동기회		서울시
	② 민간 활동기회 창출 기반 마련		
	사회적 예술단체 발굴육성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민간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③ 예술인 노동권 보장		
	예술인 참여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문화예술과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 적용		문화예술과
	예술인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업자 제재조치 강화		문화예술과
	예술인 노동·권리교육 강화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	① 청년 및 신진예술가 지원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영아트페스티벌 개최	서울문화재단
	청년 및 신진예술가 특성화 지원	서울 365 패션쇼 추진	서울디자인재단
		유망 신진디자이너 지원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②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서울문화재단
	③ 예술발표 및 활동기반 강화		
	장르별 특화 공공 문화예술 시설 확대		서울시
청년작가 Art Wall 조성		서울문화재단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생활예술시장		문화예술과	
교육·교류	① 지속적 성장을 돕는 예술역량 강화교육		
	예술인 역량 강화교육 운영		서울문화재단
	② 건문을 넓히는 예술인 국제교류		
	예술인 해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서울문화재단
	문화 예술 분야 총회 유치		서울문화재단

예술 환경	① 예술청 조성	
	예술청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②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 제정	
	서울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 마련	문화예술과
	③ 예술지원 사회 환경 구축	
	서울 예술인 사회적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	서울문화재단
	서울 예술인 종합 컨설팅 센터 운영	서울문화재단

자료 : 서울시(2016), 서울예술인플랜

(2) 부산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구현’이라는 정책비전 하에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권의 신장, 예술인 생활 협력이라는 3가지 정책 목표와 1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5개 추진과제에 실행예산 2,750백만 원, 예술인 직업권의 신장은 8개 과제에 예산 7,020백만 원, 예술인 생활 협력 증진은 6개 과제, 1,410백만 원으로 총 추진예산은 11,180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시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원하였다. 이는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예술인복지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협력해 정부의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 2-13〉 부산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2020)

목표	추진과제	사업비 (백만 원)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술인 행복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예술인 100인 라운드테이블 실시 	2,750
예술인 직업권의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정책 청년예술과 인턴지원 우리 동네 예술가 양성 및 지원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빈집을 Art Space로, ‘반딧불이’ 사업 예술인 예장공간 운영 예술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7,020

예술인 생활 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자녀교육 지원 •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휴 안심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법률자문단 운영 • 부산예술인 명예의 전당 추진 • 예술인 패스 확대 	1,4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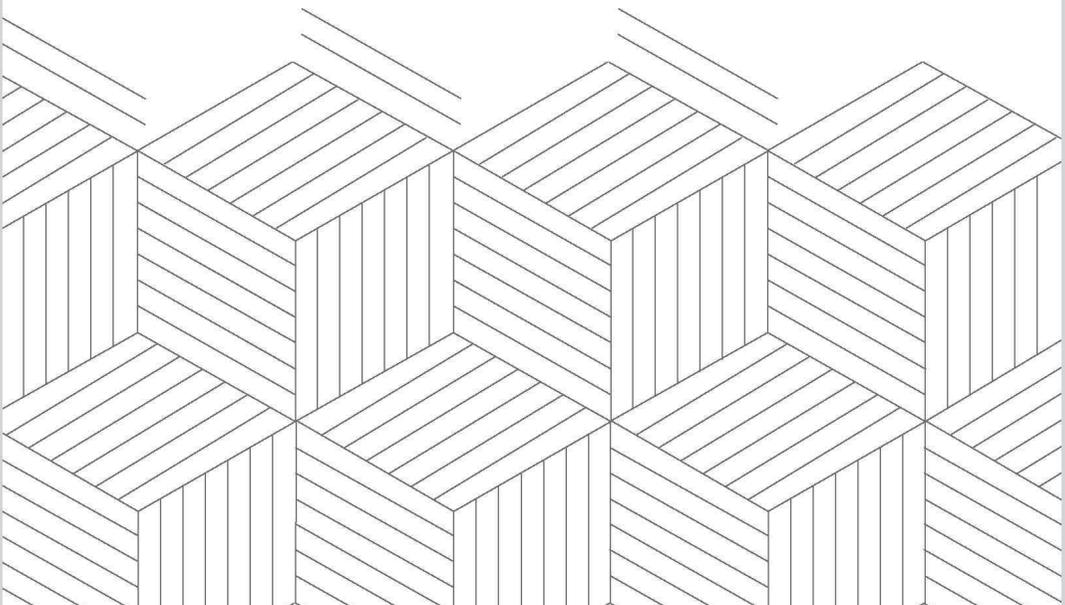
(3) 영등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인 대출보증금고 지원사업 (2020)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COVID-19 피해 긴급 대응 사업으로 대림동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등포 지역문화예술인 대출 보증 지원 진행하였다. 사업의 신청자격은 영등포구에 소재하며 활동증명이 가능한 문화예술인(단체)이고, 총 1억 원 규모로 개인 100만 원, 단체 500만 원까지 연 1.5%금리로 연내 자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추진절차는 영등포문화재단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대출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대림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시행 및 상황을 하면 된다. 이후 후속사업으로는 지역문화 상생 문화 협력 사업으로 소상공인 밀집지역 기반 거리환경 개선, 공연, 예술 간판 제작 등 지역 상생 문화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영등포문화재단 기획 사업으로 아트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제3장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 파악

- 제1절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 제2절 수원시 예술인 현황
- 제3절 수원시 예술인 인터뷰 결과



제3장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파악

제1절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1. 예술인 지원 관련 정책 현황

1) 수원시 문화예술과 직접사업

수원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교육국 내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팀, 예술팀, 문화시설팀, 문화재활용팀, 인문학팀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책팀은 수원문화재단 지원, 수원시 문화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예술팀에서는 문화예술행사,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문화시설팀은 문화시설의 확충과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맡으며 문화재활용팀은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 추진 및 부속원 운영 관리를 책임진다. 인문학팀에서는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주간행사, 수원시 희망글판 사업과 복합문화공간 111CM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예술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지만 예술팀 사업의 일부가 예술인,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021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향유·교육지원 정책의 수가 가장 많았다. 예술향유·교육지원 정책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원연극축제, 수원발레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개최,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예술 활동과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예술지원정책으로 예술단 운영, 민간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문화시설 및 유통활성화 정책으로는 팔달문화센터건립,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이 추진 중이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과 인문도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할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표 3-1〉 수원시 문화예술과 추진사업 (2021)

구분	업무명	추진계획
예술인 복지정책 (예술인)	-	-
예술지원정책 (예술작품, 예술활동)	시민과 가까이 시민과 투게더 예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기획공연 • 찾아가는 예술무대 • 화성행궁 무예24시 시범공연 상설 실시 •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 'Together' 페스티벌
	문화예술단체와 '같이'로 높이는 문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전통문화 계승 및 활성화 • 도심 곳곳의 장소와 시민들에게 예술향유 기회 제공 • 예술 꿈나무 육성 : 학교 연주단 지원 • 예술문화 저변 확대 :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 신규 사업 운영 지원
문화시설 및 유통 활성화 (문화시설, 플랫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문화센터 건립 •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
예술향유·교육지원 (일반 국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문화원 부리학교 운영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의식행사 지원 •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 • 전통민속문화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고품격 문화 나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연극축제 • 수원발레축제 • 수원재즈페스티벌 • 송년음악회
	체험과 참여로 함께 누리는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문화재 야행(夜行)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 수원 향교 활용 및 활성화 사업 • 구) 부국원 전시관 운영
기타	문화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수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 타 정책사업 융복합 사업 전개 • 제도적 기반 마련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중심 인문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단계 인문도시 조성 계획 수립 • 수원희망글판 운영 •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운영 • 토요일 수원 인문여행 운영 • 인문주간 행사 운영 • 인문학 콘텐츠 미디어 BOOK 운영

주석 : 업무별 추진계획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정책유형을 분류함

자료 : 수원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2021)

2) 수원문화재단 사업

수원문화재단은 크게 화성관광국과 문화국으로 구분되며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도 최근 신설하였다. 화성관광국은 수원화성(華城)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공연, 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국은 전문·생활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전용 공연장 운영 관리, 어린이 도서관 운영, 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수원문화재단 내에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부의 예술창작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

〈표 3-2〉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사업목표 (2021)

전략방향 : 생활 속 예술 환경 저변확대 문화예술 소통 확산
1. 문화예술지원 체계 고도화 및 시민문화 복지 확대 - 문화예술 창작 기반조성 및 운영의 체계화 - 문화예술교육자 역량 강화 및 생애주기별 통합예술교육 활성화 - 수원연극축제 활성화 -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2.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도시 구축 -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 문화도시 플랫폼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3. 수원SK아트리움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공연예술의 질 향상 - 수원SK아트리움 브랜드 공연 개발을 통한 관객충성도 증대 -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신규관객 개발 - 공연장 수입증대 노력 - 관객 친화적 공연장 운영
4. 융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서 어린이도서관 위상 강화 -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자료실 운영 및 장서 확충 - 독서·문화·예술·인문프로그램 운영
5. 재원 다각화 및 부서 간 협력 강화 -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다각화 - 부서 협력 강화로 내부자원 활용 및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자료 : 수원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2021)

2020년에도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에서 COVID-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사업 (2회)을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일정 정도의 예술 활동 이력이 있으면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제한하였다. 지원 내용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

구 예술인 50만 원 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특징으로는 예술작품, 예술 활동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사업비 정산의 의무가 없고,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위험 속에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로 실시한 사업이지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있다. 2021년에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는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계획안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1인당 1,000천 원씩 총 95인을 선정하는 지원 사업이다.

〈표 3-3〉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개요 (2020)

지원 대상	<p>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두 가지 기준(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p> <p>①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p> <p>(2)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 (2017~2019년) 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p> <p>(3)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p> <p>※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효한 활동증명서 보유자</p> <p>※ 예술인 여부는 관련서류 등을 통해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p> <p>※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인</p> <p>②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p> <p>※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가구원수</th> <th colspan="4">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th> </tr> <tr> <th>소득기준(원)</th> <th>직장가입자</th> <th>지역가입자</th> <th>혼합</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757,194</td> <td>59,118</td> <td>13,984</td> <td>-</td> </tr> <tr> <td>2인</td> <td>2,991,980</td> <td>100,050</td> <td>85,837</td> <td>100,076</td> </tr> <tr> <td>3인</td> <td>3,870,577</td> <td>129,924</td> <td>121,735</td> <td>131,392</td> </tr> <tr> <td>4인</td> <td>4,749,174</td> <td>160,546</td> <td>160,865</td> <td>162,883</td> </tr> <tr> <td>5인</td> <td>5,627,771</td> <td>189,063</td> <td>195,462</td> <td>192,080</td> </tr> <tr> <td>6인</td> <td>6,506,368</td> <td>220,167</td> <td>233,499</td> <td>224,298</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194	59,118	13,984	-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194	59,118	13,984	-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지원 금액	<p>1인 가구 예술인 : 30만 원</p> <p>2인 이상 가구 예술인 : 50만 원</p> <p>※ 코로나19 관련 시 지원사업(긴급지원, 무한 돌봄 등) 및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p> <p>※ 정산의무 없음.</p>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p>대상자 결정</p> <p>※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결정</p> <p>※ 지원대상이 예산 초과 시,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배점으로 순위결정</p> <p>※ 발표일 : 2020. 5월 말 예정 ※ 개별공지</p> <p>지원금 지급</p> <p>※ 지급일 : 2020. 5월 말 예정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p> <p>※ 지원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p> <p>※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p>																																							

수원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유망예술가 지원, 예술 활동 지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예술 강사·예술인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은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연극·무용·다원예술, 음악·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문학 분야가 300~500만 원이고 나머지 분야는 500~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유망예술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 및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망예술가 지원사업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사업의 신청자격은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5년 이내인 신진예술가(단체)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700만 원 이다. 사업절차는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컨설팅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현장 모니터링·작품 리뷰 → 정산서 제출로 이루어진다.

〈표 3-4〉 수원문화재단의 예술인 활동지원사업 (2021)

(단위 : 천 원)

사업 구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예산
문화예술 창작지원	수원시 전문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	80,000
경기예술활동지원 (구.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경기도 전문예술인/단체	커뮤니티 기반 예술 활동 지원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132,000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수원시 전문예술인/단체(기획) 수원시 생활예술인/단체(일반)	예술 활동지원	121,300
유망예술가 지원	전문예술인(유망예술가)	신진예술가 지원	35,000
수원문화 도담도담	지역 예술인/단체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제안에 관한 예술인, 전문가 의견 수렴	6,400
문화예술 모니터링	지역 예술인/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평가단 운영	10,000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역 예술인/단체	수원시 문화예술 자료 체계적 수집,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16,600
아트포라 활성화	아트포라 입주 작가	지동시장 내 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	8,920
문화예술 공간운영	지역 예술인/단체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연·전시 대관 공모	66,930
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활동	예술교육강사	예술강사, 예술인들의 교육 연구 지원	9,500

주석 :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사업에서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정리함

자료 : 수원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2021)

2.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평군,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의왕시, 파주시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다. 수원시도 최근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2021년 9월 28일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의회는 지역의 예술인은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면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시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며 예술인 재난 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영위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⁵⁾

조례는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했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다. 조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조(목적)는 수원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 2조(정의)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⁶⁾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한정하였다. 제 3조(시장의 책무)로 수원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규정하였다. 제 4조(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그 계획에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제5조(사업)의 범위로는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있다. 제6조(실태조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제7조(창작공간 지원)로 예술인

5)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8일 시행..2000여명 지원 (e대한경제, 2021.9.27.)

6)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는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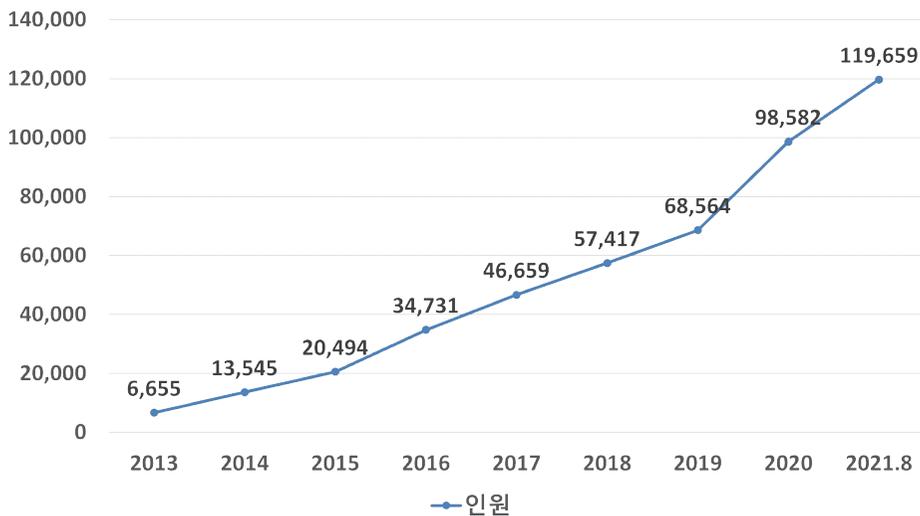
제2절 수원시 예술인 현황⁷⁾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현황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는 2021년 8월 기준 119,65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는 전년 대비 43.8%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 지원 사업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으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비율을 비교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77,402명으로 64.9%, 비수도권이 42,257명으로 35.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편중은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그림 3-1〉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추이 (전국)

(단위 : 명)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기준)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2,190명으로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고양시 (3,876명), 용인시 (2,395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예술 활동 인원은 고양시 (3.6명), 과천시 (3.4명), 양평군 (3.0명)이 많았으며, 수원시는 인구 천 명당 예술인의 수가 1.9명으로 인구 규모에 비해 예술인의 비율이 상대적

7) 수원시 예술인 실태에 관한 별도의 자료가 없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8)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는 예술인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을 완료한 사람의 수로 전체 예술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수원시 인구 규모에 비해 예술인의 수가 적거나 혹은 수원시 예술인 가운데 예술 활동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5〉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예술활동증명 안료자 현황

기초지자체	누적안료자수 (명)	비율 (%)	인구수 (명)	인구 천 명 당 인원 (명)
고양시	3,876	14.4	1,081,045	3.6
용인시	2,395	8.9	1,079,049	2.2
수원시	2,190	8.1	1,183,615	1.9
성남시	2,178	8.1	931,756	2.3
부천시	2,056	7.6	810,069	2.5
남양주시	1,399	5.2	725,031	1.9
안양시	1,310	4.9	548,960	2.4
안산시	1,142	4.2	654,678	1.7
김포시	1,063	4.0	484,481	2.2
파주시	1,038	3.9	473,673	2.2
화성시	852	3.2	872,537	1.0
의정부시	824	3.1	462,588	1.8
광주시	701	2.6	385,000	1.8
시흥시	680	2.5	511,747	1.3
군포시	678	2.5	270,293	2.5
광명시	641	2.4	295,560	2.2
하남시	573	2.1	308,390	1.9
평택시	435	1.6	551,603	0.8
구리시	400	1.5	193,954	2.1
양평군	367	1.4	120,419	3.0
의왕시	361	1.3	162,925	2.2
양주시	328	1.2	235,495	1.4
안성시	269	1.0	189,298	1.4
과천시	239	0.9	69,509	3.4
오산시	227	0.8	230,657	1.0
이천시	197	0.7	221,697	0.9
여주시	132	0.5	112,203	1.2
포천시	117	0.4	147,855	0.8
동두천시	97	0.4	93,447	1.0
가평군	94	0.3	62,348	1.5
연천군	37	0.1	42,985	0.9
합계	26,896	100.0	13,512,86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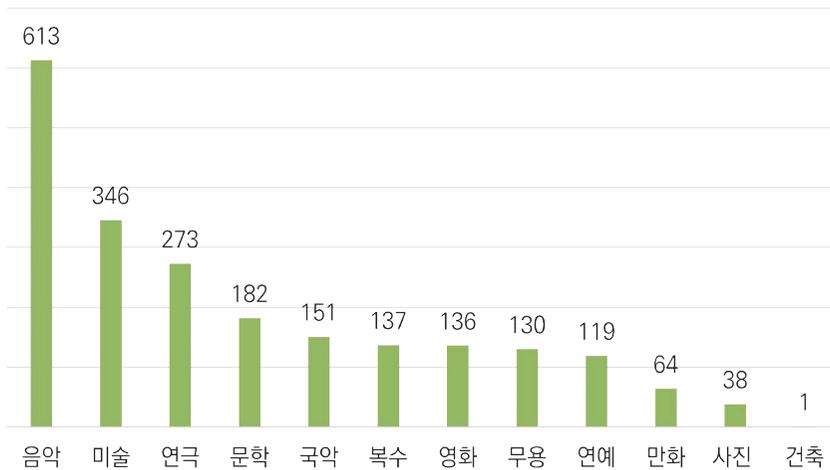
주석 : 지역별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7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기준)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음악 613명 (28.0%)과 미술 346명 (15.8%)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38.4%), 20대 (23.1%)의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 1,162명 (53%)이 남성 1,028명 (4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분포는 전국, 경기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2〉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분포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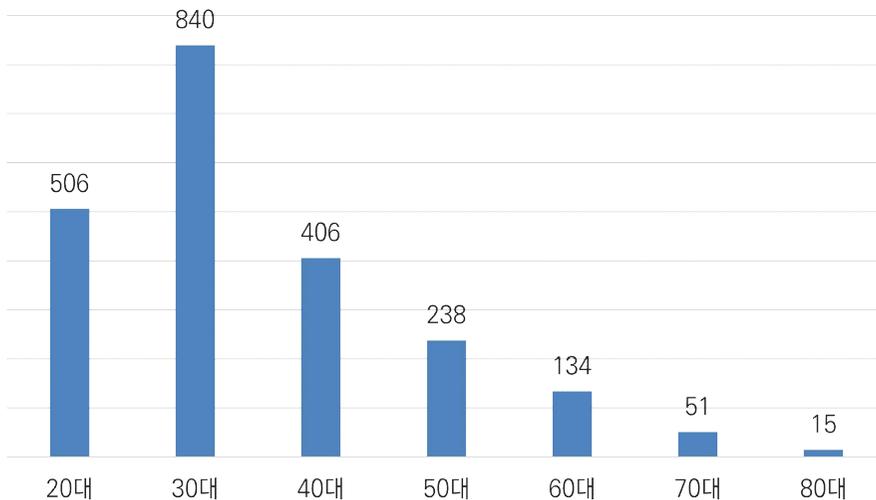
(N=2,190명, 단위 : 명)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기준)

〈그림 3-3〉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분포 (연령별)

(N=2,190명, 단위 : 명)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기준)

2.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2019) : 수원시 자료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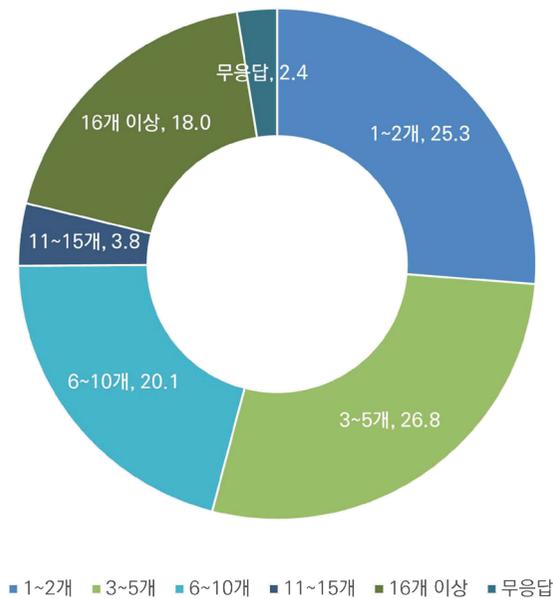
1) 예술 활동 분야 및 내용

(1)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참여) 횟수

수원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2018.1.1.~2018.12.31.) 주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를 질문한 결과 3~5개 (26.8%), 1~2개 (25.3%) 순으로 높았으며 평균은 15.5개로 나타났다.

〈그림 3-4〉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참여) 횟수

(N=12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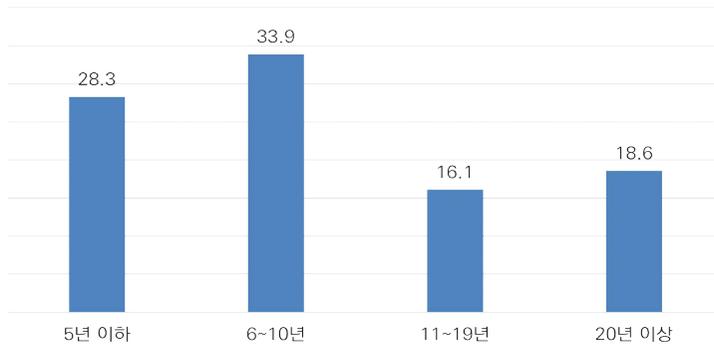
9)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및 다원(복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유효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수원시 사례수 129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2) 예술분야 활동기간

수원시 예술인의 예술분야 활동기간 (입문 혹은 데뷔 이후 활동 중간 기간을 제외)은 6~10년 (33.9%), 5년 이하 (28.3%), 20년 이상 (18.6%), 11~19년 (16.1%)로 나타났고 평균치는 10.9년 이었다.

〈그림 3-5〉 예술분야 활동기간

(N=12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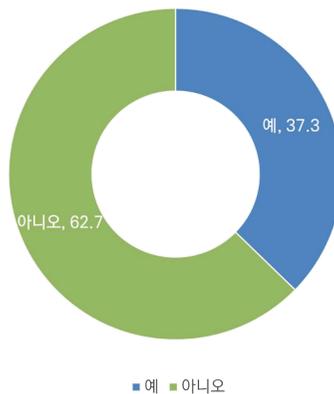


(3) 예술인 증명 (예술인 패스 등) 발급 여부

예술인 증명 발급 여부에 대하여 수원시 예술인들은 예 (37.3%), 아니오 (62.7%)로 답하였고, 이는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 전체의 44.6%가 '예'라고 응답한 것보다 낮았다.

〈그림 3-6〉 예술인 증명 발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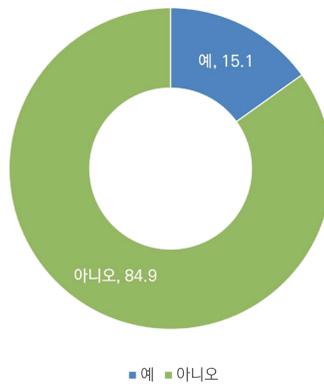
(N=129명, 단위 : %)



(4) 저작권 보유 여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 수원시 예술인의 15.1%만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저작권 보유 개수는 25.5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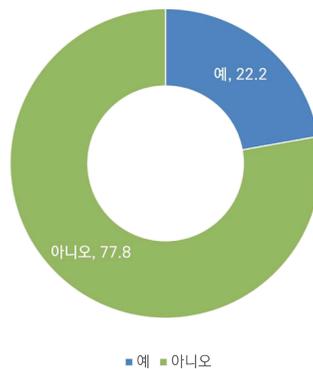
〈그림 3-7〉 저작권 보유 여부
(N=129명, 단위 : %)



(5) 예술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수원시 예술인에게 예술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2.2%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격증의 유형으로는 민간자격증, 교원·교수 자격증, 협회·단체 자격증 및 인증서, 강사·지도사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전문자격증), 무형문화재 이수·정수·보유자격증, 학예사 자격증 등이 있었다.

〈그림 3-8〉 예술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N=12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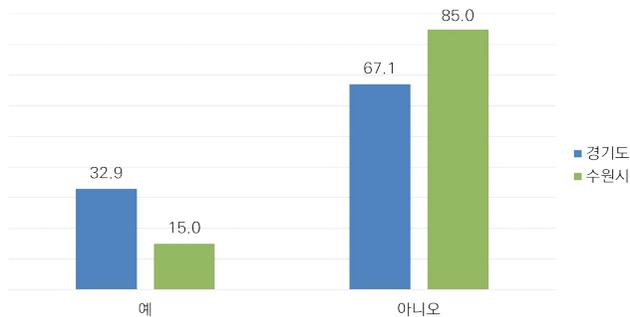
2) 지원 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1) 예술분야 관련 지원 경험 여부

수원시 예술인에게 지난 1년 간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5.0%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예술인 전체 가운데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 (32.9%)보다 약 18% 낮은 결과였다. 예술분야 관련 지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원받은 기관의 수를 물었을 때 수원시 예술인의 89.9%가 1개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9〉 예술분야 관련 지원사업 경험여부

(경기도 N=2,000명, 수원시 N=12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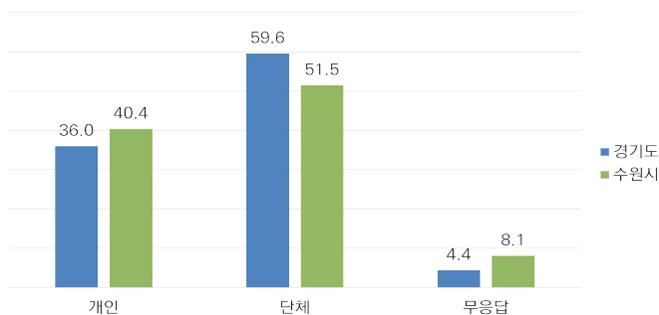


(2) 지원 사업 참여 형태 (개인/단체)

지난 1년간 예술 활동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에게 지원 사업 참여 형태 (개인/단체)에 관하여 물은 결과 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예술인 전체(59.6%)와 수원시 예술인(51.5%) 모두 단체 형태로 참여했다는 답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지원사업 참여 형태 (개인/단체)

(경기도 N=838명, 수원시 N=2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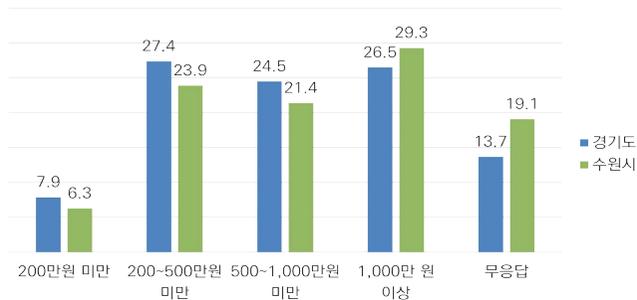


(3) 기관별 지원 예산 규모

수원시 예술인에게 지난 1년간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의 규모를 질문한 결과 1,000만 원 이상 (29.3%), 200~500만 원 미만 (23.9%), 500~1,000만원 미만 (21.4%), 200만원 미만 (6.3%), 무응답 (19.1%)로 나타났다.

〈그림 3-11〉 기관별 지원 예산 규모

(경기도 N=838명, 수원시 N=2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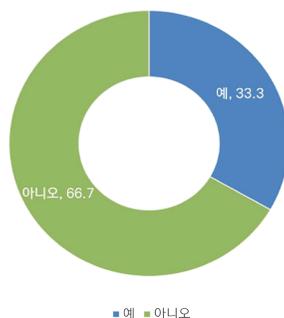
3) 활동 공간 및 교류 현황

(1)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수원시 예술인에게 개인 창작공간 보유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것으로 (33.3%) 나타났다. 창작공간의 보유 여부는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 경기도 예술인 응답 결과를 참고하면 미술 (65.9%), 다원 (41.6%), 연예 (40.7%)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이 높았던 반면, 건축 (0.0%), 국악 (20.8%), 무용 (22.0%)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2〉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N=129명, 단위 : %)



(2)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이는 수원시 예술인에게 공간의 크기를 물어본 결과 20~30평 미만 (25.3%), 10~20평 미만 (24.4%), 5~10평 미만 (22.2%), 30평 이상 (14.8%), 5평 미만 (12.4%)로 응답하였다. 수원시 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평균 크기는 18.9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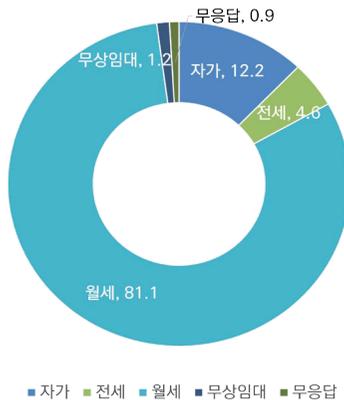
〈그림 3-13〉 개인 창작공간 크기
(N=43명, 단위 : %)



(3) 개인 창작공간 소유형태

수원시 예술인이 소유하고 이는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형태는 월세 (81.1%)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가 (12.2%), 전세 (4.6%), 무상임대 (1.2%)로 나타났다.

〈그림 3-14〉 개인 창작공간 소유형태
(N=4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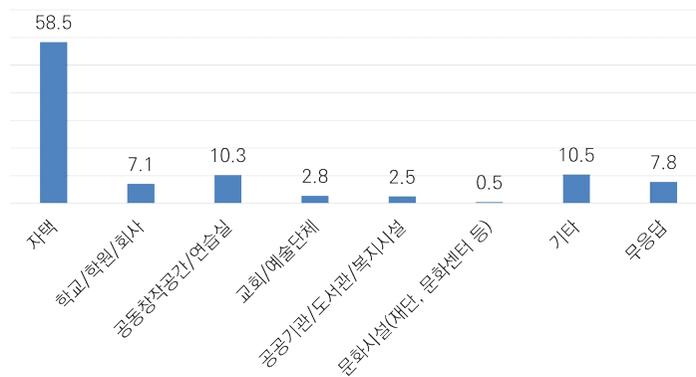


(4)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개인 창작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수원시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소는 자택 (58.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10.5%), 공동창작공간 및 연습실 (10.3%), 학교/학원/회사 (7.1%), 교회/예술단체 (2.8%), 공공기관/도서관/복지시설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N=86명, 단위 : %)



(5) 별도의 창작공간 필요성

수원시 예술인 전체에게 별도의 창작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3.6%가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30.2%, 매우 필요하다 63.4%)고 응답하였다. 특히 긍정응답 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63.4%)이 필요한 편이다 (30.2%)보다 높았다.

〈그림 3-16〉 별도의 창작공간 필요성

(N=129명, 단위 : %)



(6) 예술활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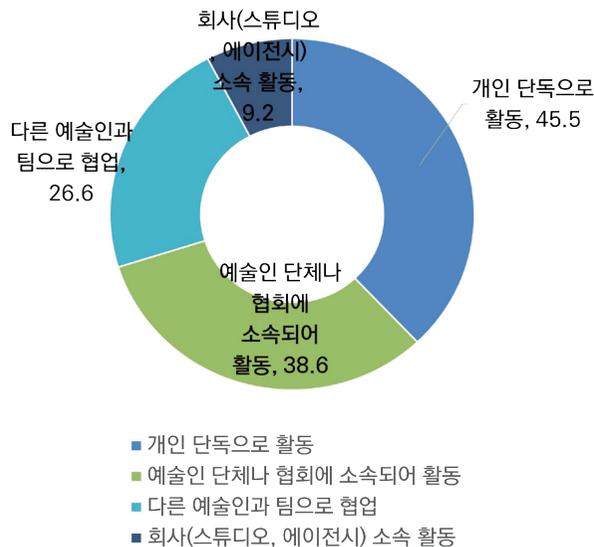
수원시 예술인의 예술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개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 (38.6%), 다른 예술인과 팀으로 협업 (26.6%), 스튜디오 혹은 에이전시 등의 회사 소속 활동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방식은 예술 분야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 경기도 예술인 응답 결과를 참고하면 다수의 분야에서 개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국악 (54.1%), 사진 (54.0%), 음악 (49.3%), 연극 (46.9%)은 예술 단체나 협회에 소속되는 비율이 높았고, 건축 (71.4%)과 무용 (50.9%)은 다른 예술인과 팀 형태로 협업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데 경기도 예술인을 기준으로 30대는 개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 (65.0%)가 가장 많았고, 60대는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 (67.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3-17〉 예술활동 방식

(N=129명,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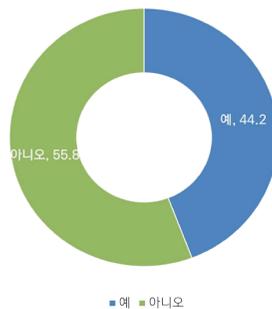


4) 고용 및 복지 현황

(1)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수원시 예술인에게 지난 1년간 (2018.1.1.~2018.12.31.)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업예술이라는 응답이 44.2%, 겸업예술인이라는 응답이 5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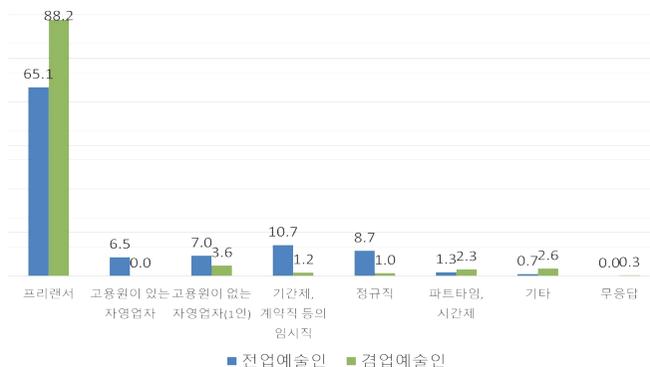
〈그림 3-18〉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N=129명, 단위 : %)



(2) 지난 1년간 고용형태 - 전업예술인/겸업예술인

수원시 예술인 가운데 지난 1년간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전업예술인은 65.1%였던 반면 겸업예술인은 88.2%로 나타나 겸업예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정규직으로 형태로 고용안전성이 있는 전업예술인은 8.7%였고 겸업예술인은 이보다 낮은 1.0%로 나타났다.

〈그림 3-19〉 지난 1년간 고용형태 - 전업예술인/겸업예술인
(전업예술인 N=57명, 겸업예술인 N=72명, 단위 : %)



(3)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 업무 내용

수원시 예술인 가운데 겸업으로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강의 및 레슨 (2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연계 직업 (16.6%), 사무·행정·연구 (15.4%), 기타 (11.1%), 단순노무·운전 (10.3%), 자영업·사업체 운영 (5.4%), 복지·상담·서비스직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 업무

(겸업예술인 N=72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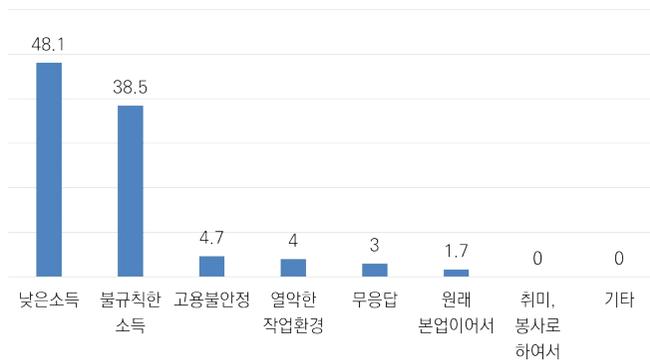


(4)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

수원시 예술인 가운데 겸업으로 일한 사람에게 예술 활동 외에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낮은 소득 (48.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불규칙한 소득 (38.5%)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3-21〉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

(겸업예술인 N=72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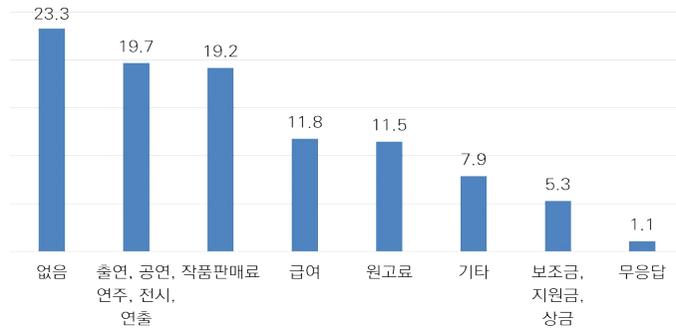


(5)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수원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을 살펴보면 없음 (2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 공연, 연주, 전시 (19.7%), 작품판매료 (19.2%), 급여 (11.8%), 원고료 (11.5%), 기타 (7.9%), 보조금, 지원금, 상금 (5.3%), 무응답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22〉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N=12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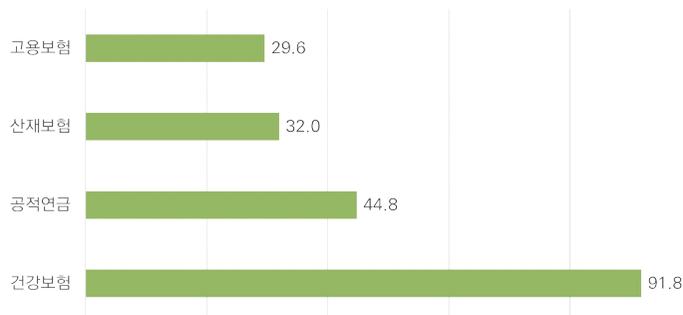


(6) 4대 보험 가입률

수원시 예술인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건강보험 (91.8%)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 (44.8%), 산재보험 (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가입률은 보인 것은 고용보험 (29.6%)이었다.

〈그림 3-23〉 4대 보험 가입률

(N=129명, 단위 : %)



제3절 수원시 예술인 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예술인의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원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수원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예술 분야, 연령대, 장애 여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총 9명을 섭외하였으며, 수원시 예술활동증명 결과 음악 분야 활동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음악 분야 예술인을 다수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4월에 1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차 인터뷰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8~9월에 실시한 2차 인터뷰에서 보완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약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예술 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 파악을 위하여 예술 활동 분야 및 수원시와의 관계, 예술 활동을 통한 경제적 활동 경험, 예술 활동과 무관한 경제적 활동 경험, 부당대우 경험 (계약, 임금, 성적 고충 등), 예술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상생활의 고충 (대출, 주택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혼 등)을 질문하였다. 그 다음 복지 및 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 경험으로 사회보험 가입 형태 및 이용의 어려움, 예술인 대상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 인지 여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예술인지원센터 인지 여부 및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예술 활동 여부 및 그 이유, 예술 활동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개선점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회적 동의 정도, 예술인 지원 특별 지원 대상, 예술인 지원 정책에 관한 자유 의견을 통해 확인하였다.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해 하는 내용은 자세하게 묻지 않았으며 말하긴 했지만 기록을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표 3-6〉 인터뷰 참여자 정보

대상	활동분야	성별	연령대	장애여부
A	미술(설치미술)	여	40대	x
B	미술(디자인)	여	30대	x
C	음악(실용)	남	30대	x
D	문학(동화)	여	40대	x
E	음악(클래식)	남	40대	x
F	음악(실용)	남	40대	x
G	음악(실용)	남	30대	x
H	국악	여	50대	x
I	음악(클래식)	여	30대	o

주석 : I씨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후견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께서 대신 인터뷰에 참여함

2. 예술 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 파악

수원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 및 일상생활 형태를 파악한 결과 예술인들은 창작, 전시, 공연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으로 예술과 연계된 활동 (강의, 기획 등)과 그렇지 않은 활동 (유통, 판매,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과 무관한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예술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적어서, 단기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겨울 시즌에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예술 활동은 개인 혹은 팀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기획사에 소속되거나 협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다양했으며 이러한 양상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가족 (특히 부모 및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예술 활동에서의 자율성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예술인의 경우 몸이 건강할 경우 자녀의 도움과 연금 등으로 '그럭저럭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쪽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거나 더러는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장애예술인의 경우는 엄밀히 구분하면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인식되던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어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전문교육을 받고 프로로 활동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보통은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를 구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당대우에 관한 질문에는 10년 전만해도 예술인의 활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늘었으나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강의와 같이 예술과 연계된 활동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오히려 공연, 전시 등의 직접적인 예술 활동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덜 중시한다, 명의도용 및 구두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공연 및 전시 비용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별과 무관하게 예술활동 과정에서 인격적·성적 모독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예술인의 경우 행사 주최 측이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며, 본인을 기생이라고 표현하며 수치스러운 얘기를 건넨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다른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겪은 성적, 인격적 모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득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예술인은 신용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안도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신의 4대 보험 가입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타 직업군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으나 2020년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정보 및 안내 부족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을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 사례

인터뷰에 참여한 수원시 예술인 가운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역의 예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으며, 고령예술인 가운데는 한국예술인재단과 그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의 불편함으로는 증명서 발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예술인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 겪은 어려움으로 가명(假名) 사용에 대한 증명, 팀 활동에서 개인의 참여를 증명하는 등의 사례를 얘기하였다. 또한 예술인 지원 사업 간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분명히 명시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전통예술 분야에서는는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예능보유자)를 지정(이수자-전수조교-보유자)하여 전수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면 전승 경비와 수당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극히 일부만 지정되며, 지정되는 시기도 늦어(보통 60대 이후) 젊은 시절 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예술인복지와는 결이 다른 사업이나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 고령 예술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해볼만 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4.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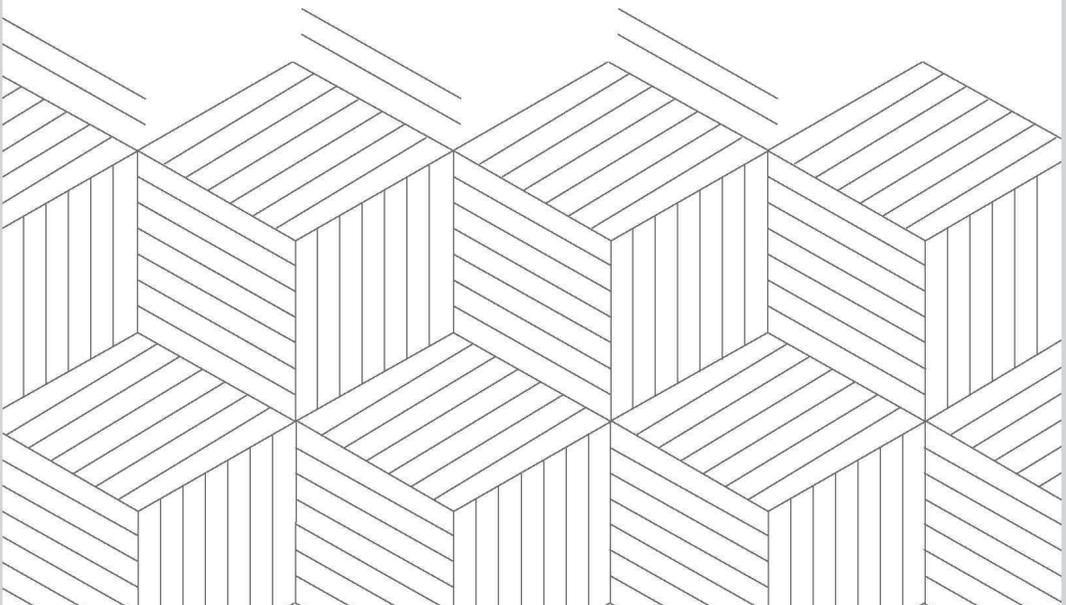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COVID-19로 인한 예술인(특히 공연예술계의 피해) 긴급지원, 예술인기본소득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그전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회적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예술인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타 직업군과는 다른 예술가의 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술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직군 전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한편으로 예술의 가치 보존과 예술 활동의 특성상 예술인

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복지 및 지원 정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예술 활동으로 인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가능하다면 자생력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분야별, 세대별, 장르별로 적합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술가의 삶에 대해 논하면서 작품을 창작하거나 무대에 한 번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으로 예술인들이 인정받고, 긍지감,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4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지방정부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제2절 수원시 예술인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제4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지방정부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예술인 복지제도는 예술계 내부의 예술정책으로만 접근해야하는 정책과제가 아니다. 예술인 복지제도의 실현은 사회 전반의 복지제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가능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가 확장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각지대를 좁혀가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이 그 확장되는 복지체계 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사회보장제도나 각종 사회제도 (보육, 임대주택 등)에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 영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 내에 예술인들을 편입시키는 것은 문체부와 다른 중앙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러한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술인들도 맞벌이부부 보육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단지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확장해 가는 과정의 양상인 것이다.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 4대 보험인데 이 4대 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직종이나 직군이 많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제도의 범주 내로 점차 많은 직업군들이 들어오고 있다. 예술인들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복지 체계를 확대하면서 예술인들의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가며 중앙정부에서의 절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단위 복지체계의 확장을 통해 예술인 복지 체계를 이뤄가는 과정은 긴 시간과 다각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단위의 예술인 지원정책이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보다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과 관련한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좁은 의미의 복지사업이라는 틀을 넘어 예술인의 상위지위와 하위지위를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술인의 활동 지속성 강화를 위한 생활기반과 창작기반 개선은 물론, 예술인이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차민경, 2020)

여기서 예술인 복지정책은 이 현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복지도 일반 사회복지 체계에서 일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거나 혹은 예술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인의 생활기반 조성 지원, 창작기반 조성 지원,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일반 사회복지 체계와 구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기보다 중앙이나 광역정부 사업의 분장 사무를 담당하거나 예술정책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조적 혹은 보완적 사업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대개 창작지원에 해당하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수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대개 지역문화재단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예술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부산, 전북, 경남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했지만 운영은 광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상헌 외, 2020)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의 예술인 정책에 대한 지역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조적 혹은 보완적 사업운영을 통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된다. 중앙정부의 예술인 정책이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체계의 확장을 통해 예술인들 또한 사회복지체계로 포함되도록 하면서 복지사업을 통해 현존하는 사각지대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정책의 일부로서 국가 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예술인들의 생계와 예술 활동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절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의 목표 또한 수원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유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보조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부처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반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중앙부처의 복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나 지원 사업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조차 정보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적인 복지사업 예를 들어 맞춤형 보육지원, 주거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는 경우에서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술인들이 직접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찾아보고 알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예술인들에게 홍보하고 제공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정보를 빠르게 제공받도록 한다. 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인 카드를 수원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업연계사업 같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협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복지재단 예술인 통계자료나 정보와 수원시의 조사통계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현황자료들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재단의 지원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을 자체 기획으로 추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복지재단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원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 사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같은 사업도 지역 신탁이나 새마을 금고와 협력하여 수원시 예술인 대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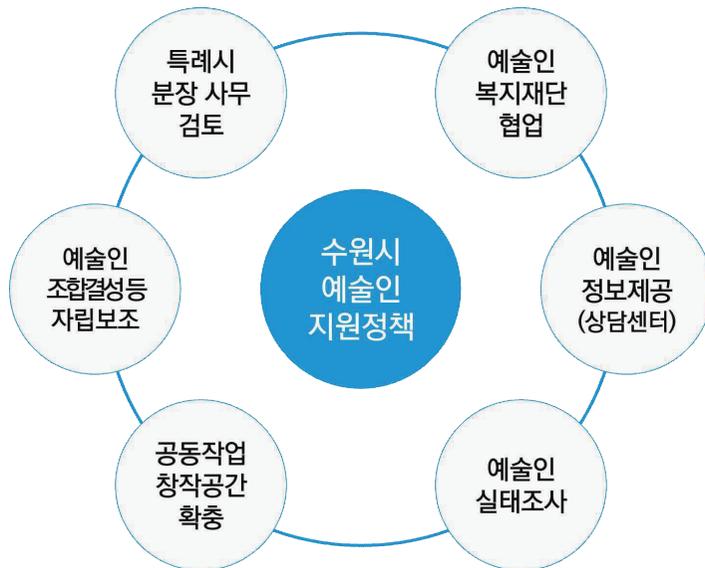
수원시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지원정책은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발표나 전시를 위한 공간은 물론이고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작업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최근 사회적으로 협업공간(co-working space)이 확산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협업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예술가들에게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창작공간 지원은 예술인들에게 안정된 창작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지원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자조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복지정책에 기대는 것을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금고나 예술인 조합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예술인 복지금고가 추진되고 있지만 수원시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예술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예술인 조합의 결성과 연계시킨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원시 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전국적인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비정기적인기는 하나 대략 4~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수원시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예술인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술인 복지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에 관한 정책 전반을 위해 이러한 실태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정기적인 조사수행을 통해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원시가 특례시가 승격함에 따라 특례시로서의 분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이에 예술인 지원정책에서도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찾아내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조정해야 한다.

〈그림 4-1〉 수원시 예술인 지원정책 사업제안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경기문화재단(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 김태완 외(2016),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7),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새 예술정책(2018-2022)
- 박영정(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박영정(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노동리뷰
2012년 7월호, pp.5-20
- 부산문화재단(2018), 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 서울시(2016), 서울예술인플랜
- 유네스코(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 차민경 외(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문화예술(Korean Culture & Arts Journal), 2016년 5월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2019년 연차보고서
- 한상현 외(2015), 지역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상현 외(2019),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대전세종연구원

〈신문기사〉

- 예술인 창작수당은 '기본소득' 마중물 (머니투데이, 2021.8.3.)
- 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문체부,
2021.8.31.)
-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8일 시행..2000여명 지원 (e대한경제, 2021.9.27.)
- 예술인 창작수당은 '기본소득' 마중물 (머니투데이, 2021.8.3.)

〈홈페이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wcf.or.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 부 록 |

1.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1.09.28.제정)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9.28 조례 제42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1.09.28 조례 제4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술인 복지법」 (2020.02.11.타법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12. 3.>]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9. 12. 3.>]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의2 삭제 <2021. 9. 24.>

[시행일 : 2022. 9. 25.] 제6조의2

제6조의3(재정자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자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본조신설 2016. 2. 3.]

제6조의3 삭제 <2021. 9. 24.>

[시행일 : 2022. 9. 25.] 제6조의3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2. 9. 25.] 제6조의4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 4. 17.]

[중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2019. 12. 3.>

-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 삭제 <2019. 12. 3.>
-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2019. 12. 3.>

-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21. 9. 24.>
- 3. 삭제 <2019. 12. 3.>
-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시행일 : 2022. 9. 25.] 제18조

부칙 (생략)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1.09.24.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 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제1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초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의결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예술인보호관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 ⑥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수사의뢰
- 2. 행정처분
-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생략)

Abstract



A Direction of Supporting Artists in Suwon City

Since the Artist Welfare Act was enacted in 2011, welfare programs for artists have been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but local artists are either excluded from the benefits. Artists were one of who suffered the most from COVID-19 in 2020. Discussions on artist welfare have become active socially,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paring the Master Plan for Artist Welfare Policy (2022-2026).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end to identify and present the right solutions and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artists in Suwon for the artist support system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artist support poli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rtists in Suwon City, statistics on artistic activity certification from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d data from Gyeonggi-do Artists Survey conduct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ere reviewed. Also, we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rtists in Suwon to understand their artistic activities and daily life patterns, cases of benefit from artist support programs, and perceptions and needs for artist support policie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artist support policy is inevitably a supplementary policy that complements the regional specificity of the national level artist support policy. For the local government's artist support policy, it is important to find and supplement what the artist support programs have missed while properly implementing the national artist support policy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conditions of Suwon City and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artists, I proposed operating an artist counseling cente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expanding co-working space, conducting a survey on artists in Suwon, and coordinating makeup affairs in Special Mega City.

Keyword: Artist Welfare, Artists Support Policy,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Artist Counseling Center, Makeup Affairs in Special Mega City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영상문화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심지은

사회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jie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영상문화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